

## 외국인범죄에 대한 경찰의 역할방안에 관한 논의

- 외국인범죄의 특성 및 발생동향을 중심으로 -

### A Discourse on Role Plan of the Police to Foreigners' Crimes

: focus on Characteristics and Occurrence Tendency of  
Foreigners' Crimes

박 호 현\* · 김 종 호\*\*

Park, Ho-Hyun · Kim, Jong-Ho

#### 목 차

- I. 서 론
- II. 외국인범죄에 대한 이론적 배경
- III. 외국인범죄의 실태 및 현황분석
- IV. 경찰의 역할방안
- V. 결 론

#### 국문초록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인간으로서 누려야할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합의에 의해 형성된 하나의 합의체이다. 이러한 합의를 통해 만들어진 국가는 국가에 소속된 구성원들을 보호하고 그 외의 이방인들을 배격하면서 국가의 틀을 형성해 왔다. 즉, 동일한 인종, 동일한 문화, 동일한 언어를 바탕으로 하나의 구성체를 이루어왔다는 것이다. 결국 이러한 민족주의는 다른 것을, 차이나는 것을 인

논문접수일 : 2018. 09. 30.

심사완료일 : 2018. 11. 01.

게재확정일 : 2018. 11. 01.

\* 경찰학박사 · 원광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강사(제1저자)

\*\* 경찰학박사수료 · 원광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강사(교신저자)

정하지 못했고, 단지 차별의 대상으로서 또는 혐오의 대상으로서 여겨왔을 뿐이다.

그러나 시대의 흐름을 통해 세계화, 개방화의 물결 속에서 1990년대 다양한 인종과 민족들이 직업을 얻기 위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국내로 유입되었다. 하지만 그들은 다른 인종, 다른 언어에 의해 어려움을 겪어야 했고, 이러한 어려움은 그들을 인종차별, 멸시, 모욕, 혐오의 대상으로 만들어 버렸다. 대한민국 영토 내에서 삶을 영위해 가는 모든 구성원들은 헌법에 따라 기본권적 권리를 부여받는다. 이러한 기본권적 권리는 그 본질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법률에 의해서도 제한할 수 없도록 명문화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체류 외국인들은 사실상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기본권적 권리들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기본권이라고 하는 것은 그 대상이 내국인이건 외국인이건 상관없이 누릴 수 있는 천부인권적 권리가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내체류 외국인들은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하고 범죄를 범하게 된다. 이러한 국내체류 외국인들의 범죄발생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범죄발생 후의 직접적 대처도 중요한 일이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범죄발생의 예방을 위해 경찰의 역할과 기능이 중요하게 작용하게 된다. 경찰은 수사권을 가지고 국가공권력을 행사하는 기관이지만 국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임무로 인식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경찰에 의한 외국인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주제어** : 민족주의, 기본권, 세계화, 범죄예방, 경찰

## 1. 서론

1990년대를 전후해 일자리와 생계유지를 위해 다양한 인종과 민족들이 유입되었다. 특히, 그들은 국내의 근로조건 개선 및 국민들의 인권강화에 따라 대부분 3D업종에 종사하게 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국내체류 외국인들이 국내에서 삶을 살아가는 동안 가장 어려운 문제는 문화적 차이와 의사소통의 어려

움 그리고 그들을 바라보는 편견과 무시 그리고 인종적 차별이었다. 대한민국 영토 내에서 살아가는 구성원들은 헌법을 통해 기본권적 권리를 인정받는다. 즉, 노동자로서 가지는 노동3권을 비롯해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인간으로서 살아가기 위한 최소한의 권리를 부여받는다. 이러한 기본권에 대한 본질적인 내용은 법률에 의해서도 침해하지 못하도록 헌법규정을 통해 명문화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헌법의 명문규정도 불구하고 국내체류 외국인들에게는 내국인과 같은 권리가 인정되고 있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내국인이 노동자로서 가지게 되는 노동3권 또한 외국인 노동자에게는 잘 지켜지지 않는다. 즉,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가입하며 노동자대표와 사용자간의 교섭이 이루어지며 경우에 따라서는 쟁의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들이 사실상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일자리를 통한 생계유지를 위해 국내에 들어온 외국인들은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문화적 차이와 언어소통의 어려움 그리고 이방인이라는 차별, 멸시, 모욕이 그들을 더 큰 고통으로 빠져들게 만들어 결국 범죄를 범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국내체류 외국인들의 범죄발생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범죄발생 후의 직접적 대처도 중요한 일이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범죄발생의 예방을 위해 경찰의 역할과 기능이 중요하게 작용하게 된다. 경찰은 수사권을 가지고 국가공권력을 행사하는 기관이지만 국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임무로 인식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경찰에 의한 외국인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따라서 외국인 및 외국인범죄의 특징을 바탕으로 외국인범죄의 발생동향을 살펴 외국인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경찰의 역할방안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한다.

## II. 외국인범죄에 대한 이론적 배경

### 1. 외국인의 의의

외국인이란 외국국적을 가진 사람과 국적을 가지지 못한 사람으로서 대한민

국 국민이 아닌 사람을 의미한다. 헌법은 국제법과 조약을 통해 외국인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있다. 특히, 헌법에 의해 체결·공포된 조약은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외국인의 인권도 국내법의 적용을 받는 내국인과 동일하게 보호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범죄피해를 당한 외국인도 헌법에 의해 보호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참정권 및 국가의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는 일에 있어서는 외국인의 참여를 제한하는 경우도 있다.<sup>1)</sup>

외국인범죄는 외국국적을 가진 사람에 의해 발생하는 범죄로서 형법에 명문화되어 있는 규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사람을 말한다. 결국, 대한민국 영토 내에서 외국인이 범(犯)한 범죄를 말한다. 또한 형법 제5조는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내란죄, 외환죄, 국기에 관한 죄, 통화에 관한 죄, 유가증권·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 문서에 관한 죄 중 제225조(공문서 등의 위조·변조) 내지 제230조(공문서 등의 부정행사)를 범한 경우, 인장에 관한 죄 중 제238조(공인 등의 위조, 부정사용)를 범한 외국인에게도 적용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주한 미군 지위 협정’에 의해 대한민국 영토 내에 있는 미군과 군속 그리고 그 가족들에 의해 발생하는 범죄, 중국국적을 가진 조선족, 미국 시민권을 보유하고 있는 교포, 일본국적을 보유한 교포 등에 의해 발생하는 범죄 모두 외국인범죄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헌법은 제3조에서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어 북한주민에 의해 발생한 범죄를 외국인범죄라고 하지는 않는다. 또한 각 국가가 인정하는 법적 규정은 다르지만 범죄피해를 당한 외국인에 대해서 최대한의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특히, 국가 간의 장벽이 무너져 지구촌내의 모든 경제활동이 하나의 흐름 속에서 이루어지고, 사회·문화적 활동들이 세계화, 거대화되어짐에 따라 외국인도 내국인과 평등한 피해자 권리를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sup>2)</sup>

## 2. 외국인의 유형

1) 김영규 외 4인, 「신(新)법학개론」, 박영사, 2014, 15-20면.

2) 박동수, “국내 체류 외국인의 특성이 범죄피해에 미치는 영향”, 광운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4, 9-10면.

출입국관리법 제10조 제1항은 ‘입국하려는 외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류자격을 가져야 한다.’라고 명문화하고 있다. 그러므로 출입국관리법을 통해 국내에 체류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외국인 근로자와 자격을 가지지 못한 외국인 근로자로 구분할 수 있다. 따라서 체류자격을 갖추었느냐 갖추지 못했느냐는 국내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는 국내에 입국할 때에는 자격을 갖추었다가 이후 사업장을 이탈하거나 국내체류시간 초과로 불법체류가 된 경우 및 처음 입국한 때부터 취업을 할 수 없는 비자로 들어와 취업하고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sup>3)</sup>

국내에서 체류하여 취업활동을 하고 있는 외국인은 전문외국인, 비전문외국인, 불법체류 외국인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전문외국인은 국내에서 한국인 노동자만으로 인력을 보충하기 힘든 전문적 기술을 요구하는 분야에 전문기술을 보유한 외국인을 채용하는 것을 말한다. 출입국관리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는 외국인의 체류자격을 규정해 놓고 있다. 이에 따라 전문외국인은 E-1에서부터 E-7까지의 자격을 갖춘 외국인을 말한다.<sup>4)</sup> 그리고 비전문외국인은 전문적 기술을 가지고 있지 않아 단순한 노동에 종사하며 생활

3) 오세연·곽영길, “안전도시 구축을 위한 세종특별자치시의 외국인범죄 대책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자치행정학보』 제31권 제2호, 한국자치행정학회, 2017, 221-222면.

4)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는 별표1을 통해 그 자격을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문외국인은 E-1(교수, 고등교육법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이나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 전문분야의 교육 또는 연구·지도 활동에 종사하려는 사람), E-2(회화지도,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외국어 전문 학원, 초등학교 이상의 교육기관 및 부설어학연구소, 방송사 및 기업체 부설 어학연수원, 그밖에 이에 준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서 외국어 회화지도에 종사하려는 사람), E-3(연구, 대한민국 내 공사기관으로부터 초청을 받아 각종 연구소에서 자연과학 분야의 연구 또는 산업 상 고도기술의 연구·개발에 종사하려는 사람으로서 교수(E-1)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된다), E-4(기술지도, 자연과학분야의 전문지식 또는 산업 상 특수한 분야에 속하는 기술을 제공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내 공사기관으로부터 초청을 받아 종사하려는 사람), E-5(전문 직업,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자격이 인정된 외국의 변호사, 공인회계사, 의사, 그밖에 국가공인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법률, 회계, 의료 등의 전문 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으로서 교수(E-1)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E-6(예술홍행, 수익이 따르는 음악, 미술, 문학 등의 예술 활동과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연예, 연주, 연극, 운동경기, 광고, 패션모델, 그밖에 이에 준하는 활동을 하려는 사람), E-7(특정 활동, 대한민국 내의 공사기관등과의 계약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특별히 지정하는 활동에 종사하려는 사람)을 말한다(자세한 내용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1 참조).

하는 외국인을 말한다. 이에는 산업연수제도를 비롯하여 E-9(비전문취업), H-2(방문취업)가 포함된다. 또한 불법체류 외국인은 국내에 체류할 수 있는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불법적으로 국내에 들어온 경우 및 취업비자를 통해 국내로 들어왔으나 사업장이탈, 국내 체류기간 초과, 관광 및 방문 등의 취업을 할 수 없는 비자로 국내에 들어와 취업을 하고 있는 경우 등을 말한다.<sup>5)</sup>

### 3. 외국인범죄의 특성

#### 가. 직업에 따른 특성

외국인범죄의 특성을 인지하기 위해서는 직업에 대해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범죄의 원인을 분석하는데 직업은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범죄자가 직업을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는 범죄와 어느 정도의 관련성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즉, 취업활동을 하고 있지 않거나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안정적이지 못한 경우에는 개인적 좌절감을 통해 범죄를 범(犯)할 가능성이 생길 수 있다. 또한 범죄의 전력을 가진 친구 및 동료 등과의 만남을 통해서도 범죄발생이 이루어질 수 있다.<sup>6)</sup>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정의 구성원들에 대한 직업군을 살펴보면 합법적 방법을 통해 취업활동을 하고 있는 외국인으로서 연구기술직, 어학관련 강사 등 적정수준 이상의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들이다. 이러한 사람들은 화이트칼라 범죄를 범(犯)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화이트칼라 범죄는 일반적으로 ‘숨은 범죄’가 많은 것이 특징이기 때문에 정책수립에 어려움을 겪는 것도 사실이다. 또한 불법취업을 하고 있는 외국인도 넓은 의미에서는 다문화가정의 직업군으로 분류할 수 있다. 특히, 불법적 취업활동을 하고 있는 남성외국인들의 경우에는 안정적이지 못한 단순노동에 종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사람들의 특징은 불안정한 직업을 통해 경제적으로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대부분

5) 김현미·김경제, “체류관련 출입국관리법의 문제점”, 『세계헌법연구』 제23권 제1호, 세계헌법학회, 2017, 79-81면.

6) 김준호 외 6인, 『청소년비행론』, 청목출판사, 2018, 86-94면.

이며, 실업상태인 외국인 다음으로 범죄율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여성외국인들의 경우에는 쉽게 수입을 올릴 수 있는 성매매 등의 행위를 통해 퇴폐문화를 조성하고 범죄조직과의 일정한 관계형성을 바탕으로 취업알선이 이루어질 수 있다. 또한 외국인 직업여성의 수입에 대한 범죄조직의 착취로 제2의 범죄가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sup>7)</sup>

#### 나. 문화적 차이에 따른 특성

1990년대 이후 외국인의 국내유입은 급격히 증가하였다. 특히, 2015년 실태 조사를 바탕으로 결과를 살펴보면, 전체 다문화가구는 278,036가구이다. 즉, 2015년 주민등록 인구에 대한 통계수치에 따르면 전체 가구의 1.32%를 차지하는 비율이다. 이러한 결과는 2012년 다문화가구 266,547가구와 비교하면 4.3%가 증가한 비율이라고 할 수 있다.<sup>8)</sup>

다문화가정의 총 인원수는 2015년을 기준으로 82만 명에 이르며, 매년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증가세를 바탕으로 2020년에는 100만 명에 가까운 수(數)적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결혼이민자, 인지·귀화자 수(數)는 30.5만 명, 배우자 수(數) 또한 30.5만 명에 이른다. 뿐만 아니라, 다문화가정 자녀의 수는 20.8만 명에 이르고 있다.<sup>9)</sup>

국내에 유입된 외국인에 의해 발생하는 범죄들은 인종과 민족에 따라 일정한 차이를 나타낸다. 즉, 각 국가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특징들의 사유화를 통해 사고(思考)의 틀을 형성하고 있는 외국인들은 각기 다른 전통적 견고성 및 지속성의 차이를 나타낸다. 또한 어떠한 방법으로 국내에 유입되었는지도 범죄발생과 일정한 관련성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결과적으로 민족적 내지 인종적 전통이 견고하고 지속성을 유지하는 경우에는 서로의 어려운 점을 인식하고

7) 한상암·박호현, “다문화 범죄의 테러발생 가능성에 대한 경찰의 대응방안: ‘김하일 사건’을 중심으로”, 『한국경찰학회보』 제18권 제5호, 한국경찰학회, 2016, 366-367면.

8) 정해숙(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5년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분석(연구보고서)」, 여성가족부, 2016, 23면 참조.

9) 자세한 내용은 2015년 여성가족부 다문화정책과의 ‘다문화가족 관련 연도별 통계’ 내용 중 1면 참조.

도우며 살아가기 때문에 범죄를 범(犯)하는 경우가 드물다. 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문화적 갈등이 발생할 수 있고 이러한 문화적 갈등에 의해 범죄가 발생하기 쉽다는 것이다.<sup>10)</sup>

특히, 외국인 자녀들에 의해 발생하는 범죄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그 이유는 자녀양육과 부모역할과의 관계를 통해 알 수 있다. 자녀와의 관계 만족도를 5점 만점으로 했을 때, 2015년에는 4.42점을 나타내어 2012년(4.44점)에 비해 조금 낮아졌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자녀와 친밀하다고 느낀다는 응답은 89.4%였지만, 자녀 친구들에 대해 잘 알고 있다는 응답은 54.2%에 불과했다. 특히, 결혼이민자·귀화자의 부모역할 점수를 보면 5점 만점에 3.99점, 배우자가 부모역할을 잘하고 있다는 응답도 3.96점으로 비슷한 점수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5세 이하의 자녀를 둔 경우 77.4%가 부모역할 수행에 어려움이 있다고 응답했다. 그중 한국어 가르치기(31.4%)와 바쁠 때 자녀를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21.5%)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응답했다. 이혼·별거(44.5%), 사별(31.2%)의 경우 자녀를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는 비율이 더 높다고 할 수 있다. 학령기 자녀를 둔 경우 76.8%가 학부모로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응답했고, 그중 가장 큰 어려움은 자녀가 배우는 교과목이나 학교생활을 잘 알지 못해서(29.6%)이며, 그 다음으로 경제적 지원(12.9%), 다른 학부모와의 대화나 정보습득의 어려움(12.4%) 등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다문화가 구 자녀의 취학률을 살펴보면, 초등학교가 97.6%로 가장 높았고, 중학교가 93.5%, 고등학교가 89.9%, 고등교육기관 53.3%로 나타났다.<sup>11)</sup>

다른 특징으로는 다문화 구성원에 대한 인권침해를 지적할 수 있다.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들은 임금체불, 과도한 근로시간, 산업재해, 고용주 및 한국인 동료들에 의한 무시 등 다양한 인권침해를 경험하고 있다. 이러한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침해 발생은 결국,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들에 대한 반감을 불러일으켜 충동적 범죄를 범(犯)할 가능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sup>12)</sup>

10) 박동수, 앞의 글, 2014, 28-30면.

11) 정해숙(한국여성정책연구원), 앞의 책, 2016, i - x xvii 참조(연구요약 부분).

12) 나달숙, “다문화 인권교육의 정립과 실천과제”, 「법과인권교육연구」 제10권 제3호, 한국법과인권교육학회, 2017, 33-37면.



#### 다. 경제적 상황에 따른 특성

결혼이민자와 귀화자 등의 고용률은 총 63.9%를 나타낸다. 특히, 2015년 경제활동인구조사를 통해 나타난 고용률이 60.3%라는 것을 감안하면, 결혼이민자와 귀화자는 총생산 인구나 비교했을 때 취업자 비율이 높음을 알 수 있다. 거주지에 따른 취업률을 살펴보면, 도시지역 취업률 60.8%, 읍면지역 취업률 73.2%로 도시지역 취업률이 12.4%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읍면 지역은 농업과 어업 등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비중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도출된 것으로 인식된다. 또한 가구별 소득에 따른 차이를 분석해 보면, 소득이 높은 결혼이민자와 귀화자의 취업률이 상당히 높았으며, 100-200만원 미만, 200-300만원 미만 저소득층 가구의 결혼이민자와 귀화자는 각 60.3%와 57.5%의 취업률을 보였다. 그리고 300-400만원 미만과 400-500만원 미만의 결혼이민자와 귀화자는 각각 77.9%와 79.4%의 취업률을 보였다. 결과적으로 고소득 결혼이민자와 귀화자가 취업을 더 잘하기 때문일 수도 있고, 결혼이민자와 귀화자 근로소득으로 가구소득이 더 높을 수밖에 없기 때문일 수도 있다.<sup>13)</sup>

결혼이민자와 귀화자가 취업한 직종을 분석해보면, 단순노무직(29.0%)이 가장 높았고, 서비스직(18.7%),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14.6%),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12.2%)순서의 비율을 나타내었다. 즉, 결혼이민자와 귀화자는 단순노무직에 종사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각 29%, 13.4%), 서비스직 종사자 비율도 높으며(각 18.7%, 10.5%),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각 12.2%, 19.8%)와 사무종사자(각 4.6%, 16.8%)의 비율은 현저히 낮음을 알 수 있다. 결혼이민자와 귀화자의 직종을 2012년과 비교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2012년에는 단순노무직(28.6%), 서비스직(19.5%),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14.1%)순의 결과를 나타내어 2015년과 비슷한 비율을 나타내었음을 알 수 있다.<sup>14)</sup>

출신국가별로는 베트남(36.9%), 필리핀(36.5%), 기타 동남아시아(37.3%) 출신은 단순노무직 종사자 비율이 높았고, 대만·홍콩(32.0%), 중국(한국계)(25.3%), 중국(22.7%) 출신은 서비스직 종사자 비율이 높다. 이와는 달리 미주·유럽·대

13) 정해숙(한국여성정책연구원), 앞의 책, 2016, 169-170면.

14) 정해숙(한국여성정책연구원), 앞의 책, 2016, 173-175면.

양주(82.0%), 일본(35.9%) 출신은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비율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가구소득별로는 고소득 가구가 전문직에 종사하는 비율이 높음을 알 수 있고, 서비스직과 단순노무직 종사자의 비율은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고소득 가구 결혼이민자와 귀화자가 고소득 직종에 취업하는 것이 이유가 될 수도 있겠지만, 고소득 직종에 취업한 결혼이민자와 귀화자가 있는 가구이기 때문에 가구소득이 높을 수도 있다.<sup>15)</sup>

결국, 이러한 통계수치를 바탕으로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범죄발생의 원인으로 경기변동과 빈곤문제를 생각해볼 수 있다. 시장경제체제하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모순들을 통해 호황기에는 거래 및 생산의 증가와 고용이 촉진된다. 반면에 불황기에는 거래 및 생산의 감소와 실업률이 증가하는 결과를 만들어낸다. 즉, 이러한 경제적 상황의 변화는 외국인들의 범죄발생 및 증가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다.

### Ⅲ. 외국인범죄의 실태 및 현황분석

외국인을 비롯해 다문화사회와 다문화가정에 대한 이해가 뒷받침되지 못하면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고, 특히 문화적 오해, 가정폭력,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당면하게 되는 범죄 등이 발생할 수 있다. 1990년대 전후로 다양한 민족 및 인종들이 생계유지 및 취업을 위해 국내로 들어왔다. 하지만 경찰은 외국인에 의해 발생하는 신종범죄, 외국인범죄자에만 중점을 두어 대응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다문화사회에서 요구되는 경찰의 역할 및 기능은 더욱 증대될 수밖에 없다. 결국, 외국인범죄의 위험요소들을 차단하고 다양한 국가의 문화들에 대한 이해를 중심으로 사회통합을 이루어야한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외국인 및 외국인범죄의 실태분석과 현황분석을 통해 외국인범죄 발생에 대한 경찰의 역할방안을 도출해 내는 기회로 삼으려고 한다.

<표 1>은 외국인들의 국적별 체류현황을 나타내고 있다. 국적별로 살펴보면

15) 한상암·박호현, 앞의 글, 2016, 366-367면.

중국인이 2012년 698,444명에서 2016년 1,016,607명으로 증가했으며, 전체 50.3%의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베트남인은 2012년에 120,254명에서 2016년 149,384명으로 증가했으며, 전체 7.3%의 비율을 나타낸다. 미국인 또한 2012년에 130,562명에서 2016년 140,222명으로 증가하여 전체 7.3%의 비율을 차지하며, 특히, 태국인이 2012년 45,945명에서 2016년 10,1187명으로 급격히 증가하여 전체 4.9%의 비율을 나타낸다. 그리고 필리핀인이 전체의 2.9%, 일본인이 2.5%의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표 1〉 국적별 체류현황

(단위: 년, 명)

구분	계	중국	베트남	미국	태국	우즈베키스탄	몽골	필리핀	인도네시아	일본	기타
'12	1,445,103	698,444	120,254	130,562	45,945	34,688	26,461	42,219	38,018	57,174	251,338
'13	1,576,034	778,113	120,069	134,711	55,110	38,515	24,175	47,514	41,599	56,081	280,147
'14	1,797,618	898,654	129,973	136,663	94,314	43,852	24,561	53,538	46,945	49,152	319,966
'15	1,899,519	955,871	136,758	138,660	93,348	47,103	30,527	54,977	46,538	47,909	347,828
'16	2,049,441	1,016,607	149,384	140,222	10,1187	55,508	35,206	56,980	47,606	51,297	395,444

출처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2012년-2016년)

전체 체류자 중 절반이상이 중국인임을 알 수 있다. 그 이유는 중국이 많은 인구를 가지고 있는 국가이면서 방문취업제도 및 관광을 통해서 한국으로 많이 입국하고 있기 때문이며, 일본 또한 관광을 목적으로 한국으로 많은 인구가 입국하고 있다. 그리고 베트남 및 필리핀, 태국은 고용허가제와 국제결혼을 목적으로 국내에 유입인구가 증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sup>16)</sup>

〈표 2〉는 체류외국인 및 외국인 피의자 현황을 나타내고 있다. 체류외국인은 2011년 1,395,077명으로 지속적인 증가율을 보이기 시작한다. 특히, 2014년에는 1,797,618명으로 14.1%의 증가율을 보인다. 하지만 2015년에 접어들면서 1,899,519명으로 5.7%의 완만한 증가세로 변화했고, 2016년에도 2,049,441명으로 5.2%의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다.

16) 이준형, “한국경찰의 외국인범죄 정책수용성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18, 9-10면.

〈표 2〉 체류외국인 및 외국인 피의자 현황

(단위: 명, %)

구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체류 외국인 (증감률)	1,395,077	1,445,103 (3.6% ↑)	1,576,034 (9.1% ↑)	1,797,618 (14.1% ↑)	1,899,519 (5.7% ↑)	2,049,441 (5.2% ↑)
외국인 피의자 (증감률)	26,915	24,379 (9.4% ↓)	26,663 (9.4% ↑)	30,684 (15.1% ↑)	38,355 (25% ↑)	43,764 (14.1% ↑)

출처 : 경찰청 내부자료

외국인 피의자 증감율은 2011년 26,915명을 나타내었고, 이후 2012년 24,379명으로 9.4% 감소를 나타내었다. 2013년에는 26,663명으로 다시 회복세를 나타내었고, 2014년 30,684명으로 15.1%의 급격한 증가세를 나타내었으며, 이후 2015년에는 25%까지 증가하였고, 2016년에는 14.1%의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다.

〈표 3〉은 외국인 범죄에 대한 범죄 종류별 현황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현황을 통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발생한 5대 범죄와 기타 범죄들 중 폭력, 교통, 지능, 절도의 순으로 발생빈도가 높았음을 알 수 있다. 특히, 5대 범죄 중 강간, 폭력, 절도범죄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살인범죄는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강도는 지속적인 감소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지능범죄 및 교통관련 범죄가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마약 및 도박사범은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고 있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

〈표 3〉 죄종별 외국인범죄 현황

(단위: 명)

연도	계 (명)	5대 범죄					기타				
		살인	강도	강간	폭력	절도	지능	마약	도박	교통	기타
2012	22,914	84	141	348	8,073	1,554	3,187	221	905	4,807	3,594
2013	24,984	73	104	499	8,338	1,743	3,353	200	699	5,965	4,010
2014	30,684	78	87	535	9,013	1,918	4,045	349	791	7,175	6,738
2015	38,355	87	139	618	10,162	2,458	5,465	420	961	9,882	8,163
2016	43,764	107	98	646	10,098	3,026	5,093	708	645	11,698	11,645

출처 : 경찰청 내부자료

〈표 3〉을 통해 알 수 있듯이 폭력범죄 및 강간범죄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증가에 대한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그중 내국인에 비해 외국인들이 폭력과 성(性)에 대한 관대한 인식을 가지고 있음을 지적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에 의해 폭력범죄 및 강간범죄가 증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문화적 차이에 따른 범죄발생의 증가라고 할 수 있다.

〈표 4〉는 범죄종류별 증감율을 4대 강력범죄와 기타범죄로 구분하여 나타내고 있다. 그중 교통관련 범죄가 65.2%로서 가장 높은 증감율을 나타내었고, 그 다음이 마약관련 범죄 56.7%, 절도관련 범죄 34%, 강간 및 추행관련 범죄 33.2%로서 각 범죄별 증감율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교통관련 범죄의 증가율이 높은 이유는 외국인에 대한 운전면허증 발급이 증가한 것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고, 그 반대로 인구밀집지역이나 유흥가를 중심으로 한 장소에서 무면허 운전을 통한 범죄발생이 증가한 것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표 4〉 죄종별 증감률

(단위: %)

구분	계	4대 강력범죄				기타					
		살인	강도	강간·추행	폭력	절도	마약	지능	도박	교통	기타
'12-'14 평균	27,242	81	138	464	8,714	1,835	268	3,528	867	5,982	5,364
'15년	38,355	87	139	618	10,162	2,458	420	5,465	961	9,882	8,163
증감률	40.8%	7.4%	0.7%	33.2%	16.6%	34%	56.7%	10.8%	10.8%	65.2%	52.2%

출처 : 경찰청 내부자료

〈표 5〉는 외국인의 국적에 따른 범죄발생 현황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외국인들의 국적에 따른 각 범죄별 발생현황 및 특징을 살펴보면 중국이 59.7%의 피의자비율을 나타내고 있고, 체류비율 50.3%와 비교했을 경우에도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범죄별 피의자 비율을 살펴보면 폭력 및 살인의 비율이 각 67.6%와 60%로 높은 비율을 제시하고 있다. 베트남은 체류비율이 7.2%로 5개 국가 중 3번째로 비율이 높고, 피의자 비율은 중국 다음으로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특히, 범죄별 피의자 비율에 있어서는 살인 및 강도가 각

16.1%와 11.5%로 비율이 높음을 알 수 있다. 몽골의 체류비율은 1.6%로 5개 국가 중 가장 낮은 비율을 나타내지만 피의자 비율이 3.9%로 높다고 볼 수 있다. 미국은 7.3%의 체류비율을 나타내어 5개 국가 중 두 번째이지만 피의자 비율에 있어서는 4.9%로 5개 국가 중 태국과 함께 3번째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범죄별 피의자 비율에 있어서는 강간과 강도가 각 9.2%와 7.2%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5〉 국적별 외국인범죄 현황

(단위: %)

국적	구분	체류비율	피의자 비율	죄종별 피의자 비율			
				살인	강도	강간	폭력
중국		50.3%	59.7%	60%	31.7%	33.5%	67.6%
베트남		7.2%	5.9%	16.1%	11.5%	2.8%	4%
미국		7.3%	4.9%	0%	7.2%	9.2%	4.6%
태국		4.9%	4.9%	3.5%	5.8%	2.3%	1.9%
몽골		1.6%	3.9%	2.3%	5%	5.3%	4.1%

출처 : 2015년 경찰청 내부자료

〈표 6〉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국적별 외국인범죄 증감율을 나타내고 있다. 2016년을 기준으로 중국은 전체 외국인범죄 43,764명 중 54.5%인 23,879명으로 절반이상의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그 다음으로 태국 7.7%, 베트남 6.0%, 미국 4.6%의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표 6〉 국적별 외국인범죄 증감률

(단위: %)

구분	계	중국	베트남	미국	태국	필리핀	일본	기타
'12년	24,379	13,646	2,059	1,832	620	317	206	3,250
'13년	26,663	15,121	1,908	1,947	656	387	211	3,760
'14년	30,684	17,870	1,943	1,916	1,362	461	208	4,335
'15년	38,355	22,898	2,267	1,884	1,869	520	279	8,638
'16년	43,764 (100%)	23,879 (54.5%)	2,623 (6.0%)	2,033 (4.6%)	3,349 (7.7%)	721	215	10,944

출처 : 경찰청 내부자료

## Ⅳ. 경찰의 역할방안

### 1. 외국인 및 외국문화에 대한 인식전환과 제도적 정책마련의 필요성

경찰은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 범죄가 발생한 경우 범죄에 직접적으로 대처하는 국가기관이다. 특히, 경찰은 범죄현장에서 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도움을 필요로 하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찾아가 시민들과 직접 만나고 이러한 만남을 통해 법을 집행하는 법집행기관이기 때문에 외국인 및 외국인문화에 대한 다양한 이해와 관심이 필요하다. 따라서 외국인범죄를 비롯해 외국인문화에 대한 다각적인 관심과 이해를 바탕으로 외국인 및 외국인문화에 대한 인식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외국인범죄의 증가에 따라 경찰의 자구적 노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경찰은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항시 직무교육 및 직장훈련을 통해 성(性)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및 외국인범죄에 대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초빙해 전문성을 높이고 있다. 하지만 일선 경찰관들은 외국인들을 가해자 및 피해자라는 형사사법절차의 주체로만 생각할 뿐 그들도 우리와 같은 국민이라는 인식은 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므로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들을 직접 초청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고 이를 통해 외국인 및 외국인문화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 각 국가만이 가지는 풍습(의·식·주 및 결혼풍습 등) 등에 대한 이해를 증대시키기 위해 사이버강의 자료를 활용해 일상생활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외국인들의 언어에 즉각적으로 반응하기 위해서 범죄가 발생한 경우 가해자 및 피해자로 구분해 대응할 수 있는 가이드북을 정리해 범죄가 발생한 경우 통역을 할 수 없더라도 기본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할 수 있도록 경찰의 자체적 해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외국인들에 대한 경찰조직내의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해 귀화 경찰관들의 활용방안을 다양하게 모색해볼 필요성이 있다.<sup>17)</sup>

17) 박호현·김종호·백일홍,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논의에 관한 고찰-다문화가정에 대한 경찰의 대응 방안 개선을 중심으로”, 『소년보호연구』 제29권 제3호, 한국소년정책

국민들의 소득수준이 높아지고 인권의식이 강화됨에 따라 3D업을 기피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었고, 이러한 현상은 결국 외국인 노동자들이 증가하는 결과를 만들어냈다. 하지만 외국인 노동자들의 증가는 단순히 내국인의 인력을 대체하는 것에 서 끝나지 않고 외국인 범죄의 증가라는 부정적 요소도 내포하고 있다. 특히, 외국인 범죄가 발생하는 이유는 노동에 따른 임금의 미지급, 인종적 멸시 및 차별 그리고 편견 등이 외국인에 의해 범죄를 발생시키게 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sup>18)</sup>

그러므로 외국인 노동자에 의해 발생하는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정책적 방안들이 논의되어야 한다.

첫째,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인식변화와 국민적 관심이 요구된다. 특히, 대부분의 외국인 범죄의 발생은 사소한 언쟁과 의견다툼이 도화선이 되어 상대방을 무시하거나 모욕감을 주는 행위로의 발전을 통해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 결국, 외국인에 대한 노동대가의 미지급, 인종적 차별 및 무시 등에 의해 외국인에 의한 강력범죄가 발생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므로 경찰공무원 및 시민들에 대한 인권교육 및 홍보활동 등을 통해 차별금지와 평등을 중요시하는 문화를 조성하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요구된다.<sup>19)</sup>

둘째, 외국인들에 의해 발생하는 범죄발생 원인의 대부분이 노동행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외국인에 대한 노동3권이 분명히 지켜져야 한다. 노동권은 헌법이 명시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권적 권리로서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가입하며 노동자대표와 사용자간에 교섭을 통해 노동조건 개선과 노동환경을 증진시키는 것으로서 경우에 따라서는 쟁의 행위를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sup>20)</sup>

셋째, 외국인 자율방범대를 조직해 범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시간대에 외국인 밀집지역 등을 경찰관과 함께 순찰하게 함으로써 외국인들이 직접 시민

학회, 2016, 80-81면.

18) 박호현·장규원·백일홍, “혐오표현의 규제 가능성에 대한 논의”, 「피해자학연구」 제25권 제3호, 한국피해자학회, 2017, 183-184면.

19) 박호현·장규원·백일홍, 위의 글, 2017, 197면.

20) 김명대·박호현, “청원경찰법 개정논의에 관한 고찰-청원경찰에 의한 노동자의 근로3권 보호를 중심으로”, 「한국민간경비학회보」 제16권 제1호, 한국민간경비학회, 2017, 35-36면.



들과 함께하고 범죄를 예방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게 됨으로 인해 외국인들에 대한 편견이 없어지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외국인 범죄발생 원인 중 언어 소통의 어려움 또한 하나의 중요한 요인으로 인식된다. 그러므로 외국인 자살방범대를 통한 일정한 소통만으로도 외국인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효과를 이끌어내게 될 것이다.<sup>21)</sup>

## 2. 외국인 범죄 발생에 대비한 ‘안전한 도시’ 구축

범죄발생을 억제하는 방법에는 발생한 범죄에 대한 직접적 대처와 범죄발생 이전에 범죄를 예방하는 방법이 존재한다. 그러나 범죄가 발생한 이후에 대처보다는 사전에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범죄발생을 억제하는 가장 실효성 있는 방법이 될 것이다. 특히, 문화적 차이, 의사소통의 어려움 등을 가진 외국인들에 의해 발생하는 범죄에 있어서는 사전예방이 더욱 중요한 방법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외국인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CPTED, 즉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이 외국인 범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중요한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CPTED의 적용이 단순히 CCTV 설치에만 그친다면 CPTED를 통한 외국인 범죄의 예방은 실효성을 거두기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범죄예방을 경찰에게만 부여된 임무라고 인식하기보다는 도시계획과 결합되어진 공간계획의 핵심적 부분으로 인식하면서 외국인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들을 제도화하는 것이 요구된다. 특히, 지리정보시스템인 GIS기법을 활용한 과학적 범죄예측시스템이 다각적으로 활용되어 시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설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책적 보완이 요구된다.<sup>22)</sup>

외국인에 의해 발생하는 범죄는 거주지역의 환경을 파괴하고 거주자들에게는 불안과 불신을 만들어낸다. 또한 외국인으로부터 직접 범죄를 당한 피해자는 육

21) 오세연·곽영길, 앞의 글, 2017, 234-235면.

22) 전재한·권재현·양효진, “GIS를 이용한 범죄의 공간적 특성”, 『한국지형공간정보학회지』 제15권 제1호, 한국지형공간정보학회, 2007, 4-7면; 김창규·강인준·박동현·김상석, “GIS와 상관·회귀분석을 활용한 5대 범죄의 특성분석”, 『한국지형공간정보학회지』 제22권 제3호, 한국지형공간정보학회, 2014, 72-77면.

체적·정신적 고통을 받게 된다. 그러므로 외국인에 의한 범죄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주거공간에서의 범죄예방을 위한 정책적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sup>23)</sup>

첫째,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시민들이 방범시설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기 위해서는 범죄예방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활용해야 한다. 이를 통해 시민들 각자가 범죄예방이 왜 필요한지를 인식하게 되고 결국 시민들 스스로 범죄를 예방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둘째, 범죄가 발생한 경우 발생범죄의 사후적 대처보다는 범죄예방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강구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범죄가 빈번히 발생하는 지역에 방범시설을 설치하여 잠재적 범죄자들이 범행의지를 결의하지 못하도록 하고 경찰서 단위의 외국인범죄 예방진단팀을 설치하여 방범시설에 의한 범죄예방과 직접적인 외국인범죄를 감소시키거나 억제시킬 수 있는 활동들이 이루어져야 한다.

지역 및 지역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지역의 물리적 환경과 지역주민들의 행동 간에 일정한 관련성을 바탕으로 지역의 범죄예방을 위한 지역 환경설계의 도입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결국 지역의 안전을 도모하고 지역이 생동감 있게 움직이도록 지역공간의 창출을 위해서라도 외국인 범죄의 예방을 위한 환경설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 3. 외국인 범죄에 대한 경찰과 비정부기관(NGO)의 상호협력 방안 구축

NGO는 공식성, 국제성, 연대성, 자발성, 공익성, 비정부성 등의 특징을 지니고 있는 비정부기구(Non-Governmental Organization)라고 할 수 있다. 즉, 비정부기구(NGO)는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국가적, 국제적, 지역적 문제를 깊이 있게 다루는 기구라고 할 수 있다. 결국, 공적(公的) 부분과 사적(私的) 부분의 중간자로 존재하면서 자율적 시민참여를 중시하는 ‘시민사회부문’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비영리성을 바탕으로 시민들의 인권존중 및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국가를 감시 및 견제하는 기능도 가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중앙정부

23) 신재현·김상운, “범죄예방진단팀(CPO)을 활용한 지방자치단체 CPTED 전략 개선방안”, 「한국경찰연구」 제16권 제3호, 한국경찰연구학회, 2017, 182-191면.

와 지방정부의 공적(公的) 기능에 상호 협력적 기능을 분담함으로써 시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전달하는 기능도 가지고 있다.<sup>24)</sup>

그러므로 외국인 범죄에 대해 비정부기구(NGO)도 국내체류 외국인과 시민 그리고 경찰을 이어주는 중간자적 역할을 통해 지역사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외국인 범죄와 관련된 다양한 문제들을 상호 협력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한다. 따라서 비정부기구(NGO)는 외국인 범죄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역할과 기능이 요구된다.<sup>25)</sup>

첫째, 비정부기구(NGO)는 정책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국내체류 외국인들에 의해 발생하는 문제들을 중요한 사회적 이슈로 인식하게 만들어 정책결정자가 그 중요성을 지각하게 만드는 역할과 기능을 해야 한다.

둘째, 외국인 범죄에 대한 정보 수집을 바탕으로 시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결과적으로 이러한 정보들을 통해 시민들의 관심과 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하는 역할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셋째, 비정부기구(NGO)는 외국인 범죄에 대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찾고 그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특히, 외국인 범죄를 해결하기 위해 경찰을 비판하거나 의사결정과정에서 시민들의 소리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대변자적 역할을 해야 한다.

넷째, 비정부기구(NGO)는 시민들과 함께 외국인 및 외국인 범죄에 대한 정책들을 실행해 나가는데 있어 경찰의 치안활동을 감시하고 견제하며 사회적으로 만연해있는 부정·부패와 관련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 나갈 수 있다. 결국, 비정부기구(NGO)는 외국인 및 외국인 범죄의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 시민들의 여론을 형성해 경찰의 치안활동을 감시하거나 감독하는 역할을 하게 되어 경찰조직이 갖는 한계를 극복하고 외국인 및 외국인 범죄에 대한 환경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역할을 해야 한다.

24) 김민영·민경률·박성민, “한국NGO의 조직문화의 유형과 개인-조직 적합성, 조직 효과성 간의 구조적 관계연구”, 「한국인사행정학회보」 제14권 제2호, 한국인사행정학회, 2015, 21-26면.

25) 윤경희, “다문화가정의 사회문제요인 탐색을 통한 경찰의 대응방안”, 원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09, 171-174면.

#### 4. 외국인에 대한 범죄예방 홍보 강화

경찰은 형사사법절차에서 강제력을 행사하는 국가기관이다. 특히, 경찰은 수사개시권을 통해 수사권을 행사함으로써 국민의 자유권에 대한 일정한 침해를 가할 수 있는 기관이다. 그러나 경찰은 이러한 강제력을 행사하는 행위 외에도 치안현장에서 직접 시민들을 만나고 소통하며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국가 기관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경찰은 국내체류 외국인들에 의해 발생하는 다양한 범죄에 대한 피해발생 언론보도 등을 참고해 국내체류 외국인들에 대한 범죄발생 예방교육 및 관련법규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그러나 범죄발생에 대한 예방교육만으로는 국내체류 외국인들에 의해 발생하는 범죄들을 예방하기란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1차적으로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근무하고 있는 근무지에 전문상담요원을 배치해 외국인 노동자들의 어려운 점을 상담하고 범죄발생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며, 2차적으로는 경찰에 의한 상시적인 상담 내지는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국내체류 외국인들이 내국인들과는 달리 문화적 차이 및 언어소통의 어려움 그리고 사회적 편견을 참아내지 못해 갈등이 생기게 되면 외국인 범죄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국내체류 외국인들에 대한 많은 관심이 요구되며 그들이 우리와 같은 대한민국의 일원으로서 융화되기 위해서는 ‘전담경찰관제’ 도입이 필요하다. 하지만 ‘전담경찰관제’의 도입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사전에 외사경찰의 인력을 보강해야 하며, 필요한 교육 또한 이루어져야 한다.<sup>26)</sup>

### V. 결 론

대한민국은 반만년 역사를 통해 한민족의 뿌리를 지켜온 단일국가이다. 이러한 국가는 민족주의를 바탕으로 일정한 지역에서 오랜 세월 함께 공동생활을

26) 박호현·김종호·백일홍, 앞의 글, 2016, 87면.

영위하면서 동일한 언어와 문화라는 공통적인 요소와 동일한 조상이라는 하나의 뿌리를 통해 한 국가의 구성원으로서 오랜 역사를 함께해 오고 있다. 이러한 민족주의의 역사는 다른 것을, 차이나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배격하거나, 차별하거나, 무시함으로써 함께 동화되는 것을 꺼려왔다.

그러나 시대적·사회적 변화를 통해 세계는 하나의 국가가 되어 지구촌이라는 영역을 형성하게 되었다. 이러한 세계화, 개방화를 통해 1990년대를 전후하여 다양한 인종의 사람들이 직업을 얻기 위해 또는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국내에 들어 오게 되었다. 하지만 국내체류 외국인들은 문화적 차이, 언어에 의한 의사소통의 어려움 등으로 고통을 당하게 되었고, 특히 인종차별, 편견, 무시, 혐오가 그들을 더 큰 고통으로 빠져들게 만들어 결국 범죄를 범하는 결과를 만들어냈다.

이러한 국내체류 외국인들의 범죄발생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범죄발생 후의 직접적 대처도 중요한 일이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범죄발생의 예방을 위해 경찰의 역할과 기능이 중요하게 작용하게 된다. 경찰은 수사권을 가지고 국가공권력을 행사하는 기관이지만 국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임무로 인식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경찰에 의한 외국인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첫째, 외국인 및 외국문화에 대한 인식전환과 제도적 정책마련이 요구된다. 국내체류 외국인들 또한 대한민국 영토 내에서 삶을 영위해가는 하나의 인격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그들도 우리와 같은 동일한 인격체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들의 문화를 존중해야 한다. 그리고 그들이 대한민국에서 삶을 영위하는 동안에는 인간으로서 누려야할 최소한의 권리들이 인정되어야 하며, 다양한 정책들이 그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마련되어야 한다.

둘째, 외국인 범죄 발생에 대비한 ‘안전한 도시’ 구축이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범죄가 발생한 경우 발생범죄의 사후적 대처보다는 범죄예방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강구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범죄가 빈번히 발생하는 지역에 방법시설을 설치하여 잠재적 범죄자들이 범행의지를 결의하지 못하도록 하고 경찰서 단위의 외국인범죄 예방진단팀을 설치하여 방법시설에 의한 범죄예방과 직접적인 외국인범죄를 감소시키거나 억제시킬 수 있는 활동들이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외국인 범죄에 대한 경찰과 비정부기관(NGO)의 상호협력 방안이 구축되어야 한다. 즉, 비정부기구(NGO)는 외국인 및 외국인 범죄의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 시민들의 여론을 형성해 경찰의 치안활동을 감시하거나 감독하는 역할을 하게 되어 경찰조직이 갖는 한계를 극복하고 외국인 및 외국인 범죄에 대한 환경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넷째, 외국인에 대한 범죄예방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 국내체류 외국인들이 내국인들과는 달리 문화적 차이 및 언어소통의 어려움 그리고 사회적 편견을 참아내지 못해 갈등이 생기게 되면 외국인 범죄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므로 국내체류 외국인들에 대한 많은 관심이 요구되며 그들이 우리와 같은 대한민국의 일원으로서 융화되기 위해서는 ‘전담경찰관제’ 도입이 요구된다.

## 참고문헌

### 1. 국내 문헌

#### 가. 단행본

김영규 외 4인, 「신(新)법학개론」, 박영사, 2014.

김준호 외 6인, 「청소년비행론」, 청목출판사, 2018.

정해숙(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5년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분석(연구보고서)」, 여성가족부, 2016.

#### 나. 논문

김명대·박호현, “청원경찰법 개정논의에 관한 고찰-청원경찰에 의한 노동자의 근로3권 보호를 중심으로”, 「한국민간경비학회보」 제16권 제1호, 한국민간경비학회, 2017.

- 김민영·민경률·박성민, “한국NGO의 조직문화의 유형과 개인-조직 적합성, 조직 효과성 간의 구조적 관계연구”, 『한국인사행정학회보』 제14권 제2호, 한국인사행정학회, 2015.
- 김창규·강인준·박동현·김상석, “GIS와 상관·회귀분석을 활용한 5대 범죄의 특성분석”, 『한국지형공간정보학회지』 제22권 제3호, 한국지형공간정보학회, 2014.
- 김현미·김경제, “체류관련 출입국관리법의 문제점”, 『세계헌법연구』 제23권 제1호, 세계헌법학회, 2017.
- 나달숙, “다문화 인권교육의 정립과 실천과제”, 『법과인권교육연구』 제10권 제3호, 한국법과인권교육학회, 2017.
- 박동수, “국내 체류 외국인의 특성이 범죄피해에 미치는 영향”, 광운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14.
- 박호현·김종호·백일홍,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논의에 관한 고찰-다문화가정에 대한 경찰의 대응 방안 개선을 중심으로”, 『소년보호연구』 제29권 제3호, 한국소년정책학회, 2016.
- \_\_\_\_·장규원·백일홍, “혐오표현의 규제 가능성에 대한 논의”, 『피해자학연구』 제25권 제3호, 한국피해자학회, 2017.
- 신재현·김상운, “범죄예방진단팀(CPO)을 활용한 지방자치단체 CPTED 전략 개선방안”, 『한국경찰연구』 제16권 제3호, 한국경찰연구학회, 2017.
- 오세연·곽영길, “안전도시 구축을 위한 세종특별자치시의 외국인범죄 대책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자치행정학보』 제31권 제2호, 한국자치행정학회, 2017.
- 윤경희, “다문화가정의 사회문제요인 탐색을 통한 경찰의 대응방안”, 원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09.
- 이준형, “한국경찰의 외국인범죄 정책수용성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18.
- 전재한·권재현·양효진, “GIS를 이용한 범죄의 공간적 특성”, 『한국지형공간정보학회지』 제15권 제1호, 한국지형공간정보학회, 2007.
- 한상암·박호현, “다문화 범죄의 테러발생 가능성에 대한 경찰의 대응방안: ‘김하일 사건’을 중심으로”, 『한국경찰학회보』 제18권 제5호, 한국경찰학회, 2016.

다. 기타자료

여성가족부 다문화정책과, 2015년 다문화가족 관련 연도별 통계.

[Abstract]

A Discourse on Role Plan of the Police to  
Foreigners' Crimes  
: focus on Characteristics and Occurrence Tendency of  
Foreigners' Crimes

Park, Ho-Hyun

*Lecturer, Div. of Police Administration, Wonkwang Univ.*

Kim, Jong-Ho

*Lecturer, Div. of Police Administration, Wonkwang Univ.*

The nation is a consensus formed by an agreement to protect lives, body and property of people and to secure basic rights as human beings. A nation created by such an agreement has formed a framework by protecting its people and excluding other foreign nationals. A nation has been built on the same ethnicity, the same culture, and the same language. After all, this nationalism did not admit the others and they were only regarded as objects of discrimination or hatred.

However, in the midst of globalization and openness, various races and nationalities have more entered South Korea to get jobs and to earn a living since the 1990s. But they suffer difficulties of racism, contempt, insult and disgust because of being different races and using languages. All members



of the South Korean territory are given basic rights by the constitutional law. These basic rights are stipulated in essential matters that they cannot be limited by such law. However, it is true that foreign residents in South Korea do not fully enjoy the basic rights that the constitution law stipulates. The basic right is fundamental that everyone enjoys regardless of whether the one is a Korean or a foreigner.

However, it is not easy to foreigners living in South Korea to overcome these difficulties and they are highly probable to commit crimes. It is important to directly response right after crime occurrence, but it is more important to prevent crimes in advance in order to deter the creation of crimes. Therefore, the role and function of the police is important to prevent crime. Because the police executes governmental authority with investigative rights, it should come up with measures to prevent crimes of foreigners to protect people's lives, bodies and property as the most important task.

**Key words** : Nationalism, Basic rights, Globalization, Crime Prevention, the Police